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: 제2026-81호(2026. 9. 8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: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준설토사에 대해 사토장 매립에 따른 적합 여부 자료로 제공
3. 점용·사용의 장소: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-1단계(2공구) 전면해역 일원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: 1,089m²(2026. 9. 8. ~ 2026. 10. 7.)
5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- 성 명: (주)연합지질 대표이사 김수남
 - 주 소: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92번길 1, 3층

2026. 9. 8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